

— 구미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(안) 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전 인 철 의원

2. 제안이유

- 법률 제6024호('99. 9. 7)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고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폐지되면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이 목적.
- 상위법 개정으로 관련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은 조례가 시행되어 혼선을 주고 있음.

3. 주요내용

- 시 조례중 12개 조례의 일부조항 내용 개정
 - 생활보호법 ⇒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
 - 생활보호대상자를 ⇒ 수급자로

4. 참고사항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, 제20조

5. 검토의견

-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('99. 9. 7) 공포되었으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혼선이 있었음.
- 금번 관련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12개 조례는 인터넷상에서 관련 내용을 검색한 바, 조례 개정이 되지 않은 조례임.
-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혼선된 용어를 정비 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 저촉은 없음.